

## 르엘 대치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0.25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청약 가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아파트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주택은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25.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주민등록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8.10.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당첨·계약 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사실 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단,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하여 입국 후 7일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 거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 ※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 포함) 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 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별 청약예치금을 충족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85㎡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르엘 대치 공급 주택형은 모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1순위 자격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 청약 가능)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적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미발생된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청약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동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 한정),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 규칙 제2조 7호의 각목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단,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획득한자는 제외)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 재당첨 제한기간(과거 당첨된 지역 기준)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인천시(일부).경기도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일부).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경기도 과천시.성남시.광명시.구리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안양시 동안구.화성시(동탄 2 에 한함).광교택지개발지구.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수원시 팔달구.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 부산시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광명시.하남시.대구시 수성구.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등)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 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

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25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부적격 처리 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내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본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1순위, 2순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5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

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 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제2항에 의거 계약취소주택(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해지된 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계약취소주택이 19세대 또는 19호 이 하인 경우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일 것
2.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 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 나.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 다.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제한기간

-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사업주체들과 협의하여 관할 지역에 있는 계약취소주택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통합하여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

구 분	일반 1순위(해당) (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	일반 1순위(기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 경기도·인천시 거주)	일반 2순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거주)	당첨자발표	서류제출기간 (일반/ 당첨자)	계약체결
일 정	11월 11일(월요일)	11월 12일(화요일)	11월 13일(수요일)	11월 20일(수요일)	11월 22일(금요일) ~ 11월 28일(목요일)	12월 2일(월요일) ~ 12월 4일(수요일)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일반공급: 자격검증 필요서류 - *청약신청자격서류 (10:00 ~ 16:00)	계약서류 지참하여 건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www.ap2you.com</li> <li>- 스마트폰 : APT2you 앱</li> </ul> </li> <li>■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www.kbstar.com</li> <li>-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www.ap2you.com</li> <li>- 스마트폰 : APT2you 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건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주택전시관)</li> <li>※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li> </ul>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모바일(스마트폰) 서비스(2018.5.28.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 18188호(2019.10.2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77번지 일원
-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5층 6개동, 총 273세대 중 일반공급 아파트 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조합원공급 220세대, 임대주택 22세대 제외)
- ☐ 입주시기 : 21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구 분	아파트코드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타 입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비 고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일 분 반 양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 계						
민 영 주 택	2019000892-01	055.9558T	55T	55.9558	19.6396	75.5954	55.8992	131.4946	35.3317	1		
	2019000892-02	059.9540T	59T	59.9540	20.2856	80.2396	59.8934	140.1330	37.5023	4		
	2019000892-03	077.9767T	77T	77.9767	25.5597	103.5364	77.8979	181.4343	48.3908	1		
	2019000892-04	059.9972	59	59.9972	20.2605	80.2577	59.9364	140.1941	37.5108	15		
	2019000892-05	077.9767A	77A	77.9767	25.5597	103.5364	77.8979	181.4343	48.3908	6		
	2019000892-06	077.9769B	77B	77.9769	25.6107	103.5876	77.8982	181.4858	48.4147	4		
합 계										31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방식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m<sup>2</sup>, 세대)

주택형 (타입)	동 (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입주지정 일
				대지비	건축비	합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계약후 30일내	2020.03.11	2020.06.11	2020.09.11	2020.12.11	2021.03.11	2021.06.11	
55.9558T 55T	101동(2호)	TH층	1	539,520	584,480	1,124,000	112,400	112,400	112,400	112,400	112,400	112,400	112,400	112,400	224,800
59.9540T 59T	102동(6호) 103동(1,2,3호)	TH층	4	573,120	620,880	1,194,000	119,400	119,400	119,400	119,400	119,400	119,400	119,400	119,400	238,800
77.9767T 77T	103동(4호)	TH층	1	768,480	832,520	1,601,000	160,100	160,100	160,100	160,100	160,100	160,100	160,100	160,100	320,200
59.9972 59	101동(1,3,4,5호) 102동(1,2,3,4호) 103동(5호)	1층	9	550,560	596,440	1,147,000	114,700	114,700	114,700	114,700	114,700	114,700	114,700	114,700	229,400
		2층	5	556,320	602,680	1,159,000	115,900	115,900	115,900	115,900	115,900	115,900	115,900	115,900	231,800
	104동(1호)	1층	1	553,440	599,560	1,153,000	115,300	115,300	115,300	115,300	115,300	115,300	115,300	115,300	230,600
77.9767A 77A	101동(2호) 102동(5호) 103동(4호) 104동(4호)	1층	4	699,360	757,640	1,457,0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291,400
		2층	2	706,560	765,440	1,472,000	147,200	147,200	147,200	147,200	147,200	147,200	147,200	147,200	294,400
77.9769B 77B	102동(6호) 103동(1,2,3호)	1층	4	699,360	757,640	1,457,0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291,4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m<sup>2</sup>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로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 및 당첨 부적격자에 대한 업무는 시공사가 대행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연속 1년 이상(2018.10.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li> <li>•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 가능)</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으로서 서울특별시,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본 아파트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 저축 요건 및 해당 주택건설 지역(서울시 1년 이상)에 거주 요건 충족 시 당해 1순위 청약 가능</li> <li>※ 청약 신청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li> </ul>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전 반드시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요망</li>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li> <li>•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li> <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li> <li>•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 / 추첨제)이 분류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li> <li>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li> </ol> </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li> </ol> </li> </ul> </li> </ul>

- 2)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1) 지역간 전입[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에서 600% 초과 청약접수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아니함]
  -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발생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
-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 부적격 당첨자 당첨제한기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됨.
- 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머문 경우 해외거주로 인정하고, 90일 이하 단순 해외여행, 어학연수, 출장 등은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함.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1순위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 추첨제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li> <li>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li> </ul> </li> <li>※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부양가족 산정시에서는 제외됨)</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 /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경기도·인천시 거주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li> </ul> </li> </ul>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8.10.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이하	100%	0%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p> <p>※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위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한다. (동 규칙 제2조 제7호의 3)</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p>
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항에 따름</p>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8호 [별표1의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등
① 무주택기간	32점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점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부양가족 산정 시) - 만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9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 점	84점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5.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매매 등 처분기준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①호와 제②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상 : 처리일

③ 분양권등의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④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일

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분양가측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해당 지자체의 무허가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 ⑨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 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 (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함)
      - 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로 봄.
      - 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 소유 아님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로 봄)
      - "계약취소 주택재공급" 에 따른 계약자는 모두 분양권(주택소유)으로 간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공급 주택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예시)

- ①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②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
- ③ 분양주택(LH, 지방공사 등)으로서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 ④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 ⑤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⑥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⑦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정당당첨자가 정당계약을 하거나,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잔여세대를 추가 계약한 경우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많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한 주택유형(타입)을 계약한 경우



▣ 청약전 반드시 과거 당첨사실 조회 요망

- 아파트 투유(www.ap2you.com)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일반공급 청약신청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बैं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자는 청약전 반드시 서울특별시 전입일 확인 요망(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 확인 요망)
  - 본 아파트의 1순위 해당지역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신청자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미만 거주신청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램

※ 견본주택 내에서는 청약접수가 불가함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가점제 적용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적용안내,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램

※ 1순위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8.10.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
- 서울특별시 1년 미만,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접수(해당지역으로 접수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서울)" 1순위에서 청약 마감 시 더이상 접수하지 않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청약신청 접수일	청약신청방법
일반 공급	1순위(해당)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 (2018.10.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2019.11.11. (월요일) (08: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 원칙</li> <li>•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 PC: www.ap2you.com / 모바일: APT2you앱</li> <li>•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www.kbstar.com / 모바일: KB스타뱅킹 앱</li> <li>※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KB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li> <li>※ 아래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li> </ul>
	1순위(기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2019.11.12. (화요일) (08:00 ~ 17:30)	
	2순위	서울특별시 거주자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2019.11.13. (수요일) (08:00 ~ 17:30)	

※ 1순위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상실

•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청약시(일반공급)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li> <li>• 모바일 청약시(일반공급)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청약시(일반공급)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li> <li>• 모바일 청약시(일반공급)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li> </ul>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 상기 접수시간 17:30은 청약접수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 시 해당은행에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청약자격(거주개시일) 기재방법(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군 단위)의 전입일 기재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 ~ 17:30으로 변경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들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li>※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해당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1순위 / 2순위 청약접수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li> </u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자한 공급신청자가 수도권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li> </ul>

▣ 당첨자 발표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19.11.20. (수요일)</li> <li>•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 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금융결제원(奎은행 청약자)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11.20. (수요일) ~ 2019.11.29. (금요일)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rt2you.com)접속 → APT → 당첨조회</li> <li>• 모바일 : APT2you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인터넷청약신청 바로가기(주택청약) → 당첨확인</li> <li>• 모바일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li> </ul>
전화(ARS)		서비스 종료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9.11.20. (수요일)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한 주택청약당첨조회 서비스가 2017.6.15부터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 (일반공급)	2019.11.22일(금요일) ~ 11.28일(목요일) 7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주택전시관)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25)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모집공고일 기준 2년 기간 지정하여 발급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분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계약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세대주 성명,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해당자 필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물등기부 등본	해당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금융결제원 발급) 등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위임장	당첨자(본인)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계약 체결 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7.1「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VII 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9.12.02일(월요일) ~ 12.04(수요일) 3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주택전시관)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한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인터넷 예약접수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무작위 추첨)합니다. 잔여세대 발생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며,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입주금 및 금융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③ 부적격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 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인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HUG-i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시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입금증	○		-	건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위임장		○	-	건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1차	우리은행	1005-503-807693	대치제2지구주택재건축정비조합, 롯데건설(주)
계약금 2차 / 중도금 / 잔금	우리은행	1005-503-809982	대치제2지구주택재건축정비조합, 롯데건설(주)

※ 분양대금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 2차부터는 계약 체결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이며, 계약금1차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전체 분양세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규제(분양가 9억원 초과)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대출은 불가하며, 이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계약자의 중도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시 시행자, 시공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시 시행자 및 시공자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및 이자 부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집니다.
- 시행자 및 시공자가 중도금 대출은행 알선 불가하며,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계약시 회차, 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월 : 2021년 9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 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GX룸), 작은도서관 등

■ **당사업지 지하주차장은 지하2, 3층으로 되어있으며, 지하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높이는 지하2층은 2.7m, 지하3층은 2.3m 미만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VIII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공품목,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55T	59T	77T	59	77A	77B
발코니 확장 금액		18,000,000	19,000,000	21,000,000	19,000,000	21,000,000	21,000,000
계약금(10%)	계약 시	1,800,000	1,900,000	2,100,000	1,900,000	2,100,000	2,100,000
잔금(90%)	입주지정일	16,200,000	17,100,000	18,900,000	17,100,000	18,900,000	18,900,000

■ **기타 선택품목**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1(부분)		선택2(전실)		제조사
	설치위치	금액	설치위치	금액	
55T	거실+안방 (실내기 2대)	4,300,000	거실+안방+침실2 (실내기 3대)	5,500,000	LG전자
59T	거실+안방 (실내기 2대)	4,300,000	거실+안방+침실2 (실내기 3대)	5,500,000	
77T	거실+안방 (실내기 2대)	4,50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 4대)	6,500,000	
59	거실+안방 (실내기 2대)	4,30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 4대)	6,500,000	
77A	거실+안방 (실내기 2대)	4,50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 4대)	6,500,000	
77B	거실+안방 (실내기 2대)	4,50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 4대)	6,500,000	

-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입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선택제공인 매립형 냉매배관을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설치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매립 배관만 시공됨 (시스템에어컨 옵션품목 선택 시 냉매매립배관 미설치)
-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은 고급형(무풍, 공기청정 기능 포함 등)이 아닌 기본형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가전기기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제조사	적용 주택형	금액	비고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LG	전평형	6,800,000	S711SI24B
빌트인 김치냉장고	LG	59T	1,200,000	K221PR14BR/L

빌트인 김치냉장고 + 수납특화	LG	55T, 77T, 59, 77A, 77B	1,700,000	K221PR14BR/L
------------------	----	------------------------	-----------	--------------

■ 마감재, 가구 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적용 주택형	금액	비고
현관	3연동 중문	55T, 77T, 59, 77A, 77B	1,600,000	
바닥	전실 원목마루 또는 안방, 침실 원목마루 + 거실, 복도, 주방 타일	55T, 59T, 59	4,000,000	
		77T, 77A, 77B	5,500,000	
주방	외산 주방가구	전타입	18,000,000	
침실	안방 불박이장	55T	4,000,000	
		59T	3,700,000	
		77T, 59	3,500,000	
		77A, 77B	3,600,000	
	침실3 불박이장	77T, 59, 77A, 77B	1,100,000	

- ※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 상기 별도 계약 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 추가 선택 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공급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설치품목 및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및 공급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 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 온도조절기, 스프링쿨러, 환기디퓨저, 천정물딩 및 커튼박스, 걸레받이 등의 수량과 형태,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현관중문 옵션에 시공되는 슬라이딩도어는 본공사시 사용성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레일 및 도어등의 디테일과 형태, 컬러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외산 주방가구 옵션 미선택 시 국산 주방가구와 색상, 크기, 형태, 디테일, 하드웨어, 악세사리, 구성 등이 외산 주방가구와 상이합니다.
- ※ 안방 불박이장 옵션 유무에 따라 측면의 불박이장, 드레스룸, 파우더장, 가구설치용 날개벽 등의 사이즈 및 디테일이 상이합니다.
- ※ 안방 불박이장 옵션 선택시 가구 내부에 설치 가능한 TV의 최대 사이즈는 주택형별로 상이합니다.(59, 77A, 77B, 77T: 최대 42인치 / 55T, 59T: 최대 48인치) 가지고 계신 가전의 사양 및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적용품목이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장이 설치되며, 상부장을 제외한 가구도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빌트인 김치냉장고 + 수납특화 옵션 선택시 김치냉장고 측면 주방가구 키큰장(빌트인팬트리) 포함이며, 59T형은 평형 특성에 따라 선택 불가합니다. 키큰장 내부구성은 외산주방가구 선택유무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이미지를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 가전제품의 경우, 용량, 효율, 에너지 등급 등의 기기의 성능 면에서 입주 시점의 최신제품에 비하여 사양, 사용성 등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KB국민은행	465101-01-277575	롯데건설(주)
잔금	KB국민은행	465101-01-277588	롯데건설(주)

-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
- ※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 관련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마감재/가구 선택, 가전기기 선택 등)의 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별도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1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은 분양 공급간지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고 높이 및 바닥마감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세대내부 커튼박스 깊이 및 길이, 몰딩의 다소 축소 및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 천장고 높이 및 바닥마감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일부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본주택에 비해 발코니 면적 및 높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수전 설치 공간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탁기 바닥단차 및 보조주방 가구 형태는 세탁기/건조기 사용성 증진을 위해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안방 전면 및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X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일반사항

#### ■ 공통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m<sup>2</sup>)]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m<sup>2</sup>)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m<sup>2</sup>)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등)과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샘플하우스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

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해 인도하기로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에 의하여 대지경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 세대 내부 옵션 관련 사항은 분양계약후 개별공지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에 의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며,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공용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식재, 시설물, 기부채납부지 등),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방음벽 유무 및 형상과 높이, 인접단지와의 경계부 마감계획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연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방식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발생시 사업주체(대치제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업시행계획 변경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변경됩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기능/성능/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의 결의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 및 변경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업시행계획 변경시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변경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시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동간거리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자전거보관소, 상가, 관리동, 주차램프, 외부계단, 가스정압기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의 일부 제한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쓰레기 관련시설, 단지출입구 문주, 동 출입구 캐노피, 단지 내 도로 및 공공보도 등) 및 단지주변 현황(인접 APT 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지하철역, 단지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입주시점 교육행정기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동명칭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주동 Core 형태에 따라 엘리베이터 동작에 따른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시공 시 품질개선 및 설계도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사항에 따르는 설계변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간섭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공동주택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지상/지하철,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감재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 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일부 마감재는 본공사 시 시공업체 입찰결과에 따라 디자인 및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벽지, 시트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일정한 무늬,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배인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 홍보물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 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은 84A타입이 시공되었으며, 미건립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다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 조형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팬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다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홀,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대중교통 관련 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수 있습니다.(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환기유니트/디퓨저, 온도조절기,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등)의 사양 및 제조사, 수량, 위치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사양, 위치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다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CG 포함),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건물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 프레임 간격 및 디자인, 세부 디테일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의 기준이 되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주택형에 따라 마감자재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사업 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도로여건 및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과 주변 혐오시설 유무,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커튼, 침대, 가전, 약세서리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견본주택 전용시설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는 본공사시 제품의 수급현황 및 성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내부에 한합니다.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구 분		설 계 공 지 내 용
주변환경 관련	기부채납공원	단지 서측의 소공원은 기부채납부지로 단지내 소유공원이 아니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공원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공 및 분양 이후, 실시계획변경인가가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시공 시,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진출입동선, 형태, 높이, 조경계획,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시설	단지 서측과 북측의 도로는 기부채납부지로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계획과 관련하여 착공 및 분양 이후, 계획변경인가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시공 시,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 도로 및 보도 선형 및 패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주변 도로	단지서측 12m도로의 경우, 보행 가능한 보도가 설치됩니다.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치1지구 공사관계로 준공전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남측 6m도로는 보차혼용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남측 주출입구앞 12m도로는 왕복2차로 차량도로 및 보행 가능한 보도가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계획변경 등으로 선형과 차로 및 보도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단지의 주출입구와 래미안하이스턴 주차장 출입구가 인접하여 교통량에 따라 진출입시 교통혼잡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근단지	단지 주변의 건물 및 공동주택 등으로 인해, 당 단지 일부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역경계	인접 도로 또는 연결녹지와 당단지의 레벨이 상이하어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 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선형, 대지경계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인허가	아파트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설계변경 및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습니다. 당 아파트는 2015년 6월 최초 건축심의접수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접수일(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분양홍보물 (모형, 카달로그, 각종 광고지)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견본주택의 사인물,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입체도, 단위세대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선·기능·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협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공통사항	각 동별 독립형 출입구 혹은 필로티형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계획됨에 따라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시공여건고려 혹은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내부디자인(마감재료, 천장고, 벽체와 바닥 두께 등), 지하출입구, 선큰,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디자인(식재계획,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DECK PLATE 또는 PC공법)은 설계변경 및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각 동(101동~106동) 옥상층에는 단지내 부대시설과 판매시설용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에어컨 가동시 인접세대로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외관디자인 마감의 재료, 색상, 디자인은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착공 및 분양 이후, 103,105,106동의 입면 마감의 경우 사업주체의 결의 및 사업계획변경인가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시공 시,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형태, 마감, 높이, 디자인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세대는 가로등 및 진출입차량의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지 북측에 인접한 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부지와 도로의 레벨 차이에 의하여 빛 공해 영향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태양광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됩니다. 추후 이로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무선 AP 및 홈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 후 관리 규약에 따릅니다.		



	<p>단지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야외운동공간,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01, 102, 103, 104, 105동 옥상에 옥상 정원이 조성되어 일부 고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각동 필로티내부 혹은 주출입구에 인접한 별도의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단지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계단실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일부층에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고 (설치개수는 동별/호수별 층수에 따라 상이함) 나머지 층은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이 설치됩니다. 다만, 그 위치, 크기 등은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엘리베이터홀 창호가 있는 경우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호는 화재 시 연기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가압을 위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엘리베이터 홀 내에 두 개의 창호가 설치될 경우, 그중 1개의 창호는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이 설치되고 나머지 창호만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됩니다.</p> <p>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p> <p>101동 남서측, 106동 남동측 하부 지하3층에는 발전기실/전기실/기계실/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주동(101동, 106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p> <p>101동 남동측 지하3층에는 우수저수조와 106동 남동측, 105동 북서측, 104동 남측 및 102동 동측 지하 3층에는 정화조가 계획되어 있고, 105동 및 106동 옥상층에 정화조 배기설비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내 단차를 고려하여, 당 단지내에는 장애인용 외부 엘리베이터와 외부계단이 설치됩니다.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105동 하부 지하층에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공간 접근 및 단지내 단차극복을 위한 장애인용 외부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인접세대에 조망권,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최하층 주차장내 펌프실 등에는 일반 및 영구 집수정이 설치되며, 집수정 배수시 펌프 소음 및 진동이 주차장 및 인접 세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노출 시공되어, 인근 주차구역에 주차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각 동 지붕에 형성되는 옥상 조경은 기계설비의 배기 등과 간섭으로 인하여 형태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p>
리모델링	당 단지는 세대간 벽체가 리모델링 가능 구조인 비내력벽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추후 세대간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획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난동선	당 단지는 테라스 및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세대 타입이 있으며 각 세대에서의 피난동선으로 인해 해당세대, 인접세대 및 공용공간, 주민공동시설 등의 환경권, 사생활권 피해 및 이용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며, 사용상의 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창고	각 주동하부에 세대당 1개소의 세대창고가 적용되며, 각 세대의 세대창고 위치는 지하 2개층으로 분산되어 입주시 배정되며 배정으로 인한 각세대에서 세대창고간의 이동거리로 인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세대창고 내 선반이 설치되고, 창고의 외부는

		밖에서 내부가 보이는 철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기설비가 설치되고, 입주후 결로,습기피해방지를 위해 적절한 설비운용이 필요하며, 세대창고의 제조사 및 사양, 마감, 선반형태 및 위치, 시공디테일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주	문주는 단지 동측 주출입구에 게이트형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지출입구	당 단지에는 동측에 주출입구 1개소(차량 및 보행자출입가능), 서측에 부출입구 1개소(보행자출입가능) 총 2개소의 단지 출입구가 있습니다. 보행자출입구에는 인근도로와의 경계부에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볼라드가 설치됩니다. 지상에 차량통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됨에 따라 차량출입구로 진입시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비상차량, 쓰레기수거차량 등 일부 특수한 경우만 차량의 지상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상출입가능 차량의 범위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최종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2층~지하3층 2개층(데크층이 지하1층임) 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단지내 총 1개소로 램프진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용되어 있으며, 별도의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추후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입 시, 차량의 높이는 2.7m이하로 제한되며(단, 주차구역은 2.1m로 제한), 2.7m를 초과하는 탑차(택배운송 등)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지하주차장에는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엘리베이터홀의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팬가동에 따른 바람, 소음, 진동 등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급배기 환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과정에서 관계기관협의를 의해 본 공사시 내·외부디자인과 용도,규모,구조,재료,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및 주민공동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동측의 101동 하부에 1개층 규모로 1개소, 서측 104동 하부에 1개층 규모로 1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저층세대는 진동, 소음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동 하부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일부 호수의 설계계획, 면적 및 입면, 출입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자 동선, 입면 등의 변경으로 인접 입주자의 조망권, 환경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변경인가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시공 시,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형태, 마감, 높이, 디자인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의 오배수 펌프실은 105동 지하3층에 설치되며, 인접 세대 및 지하주차장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비실은 단지 101동 하부 1개소, 주차장 주출입구에 1개소 총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보관소는 101동 지하2층, 관리사무소 및 방재센터, MDF실 등은 101동, 102동 하부 데크층(지하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에어컨 실외기는 각동 옥상 및 외부 조경구간에 설치되어, 최상층 및 인접한 저층세대 및 이동시 바람, 소음, 진동 등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관리사무소, 게스트룸(1객실), 다목적실, 주민카페 및 독서실은 102동 지하 1층 데크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경로당, 게스트룸(1객실) 및 맘스키즈카페는 103동 지하 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 GX룸, 탁구장, 샤워/탈의실 등)은 105동 지하 2층 데크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p> <p>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경로당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 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독서실의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 탁구장)의 운동장비(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청의 의견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시, 시설물의 분리가 불가하므로 관리의 주체는 공동주택과 함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p> <p>근린생활시설은 구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됩니다.</p> <p>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p>
무인택배보관소	<p>무인택배보관소는 각 주동출입구에 1개소씩 설치되며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101동	<p>하부 근린생활시설과 방재센터 등으로 인하여 저층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북측 외부도로와 동측 외부도로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p> <p>문주와 하부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디자인으로 인해 저층부 세대가 일부 간섭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망권 침해 및 시야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북측으로 야외운동공간, 남측으로 수경시설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01동 55T 2호 라인 테라스 세대는 실외기실의 그릴이 타세대와 상이하게 상부에 높게 설치되어, 실외기 설치용 받침대가 설치됩니다.</p> <p>동측에 근린생활시설 에어컨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3개소(102동 남측,105동 북측,106동 북측)이며, 101동, 103동, 104동은 인근 동과 공동사용할 수 있습니다.</p> <p>1,2,3호용 엘리베이터 1대, 4,5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102동	<p>북측 외부도로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p> <p>북측으로 야외운동공간과 휴게공간, 남측으로 티하우스를 포함한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p>

	<p>발생될 수 있습니다.</p> <p>102동 6호세대는 구조상 실외기실내에 배수 및 우수 입상배관이 벽체와 일정간격 이격되어 시공이 됩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하부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및 게스트룸, 다목적실, 주민카페, 독서실 등)로 인하여 저층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102동 5호 세대는 주방창을 통해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보일 수 있습니다.</p> <p>102동 3,4호 세대는 거실, 침실1, 침실2 창을 통해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보일 수 있습니다.</p> <p>1,2호용 엘리베이터 1대, 3,4호용 엘리베이터 1대, 4,5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p>102동 후면에는 공동주택의 정화조 청소용 배관이 설치되어, 정화조 청소차의 출입 및 작업으로 냄새가 발생할수 있으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북서측에 103동과 사이에 외부계단이 설치됨에 따라,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에 소음, 조망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103동	<p>북측 외부도로와 서측의 소공원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p> <p>1,2호용 엘리베이터 1대, 3,4,5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p>동남측에 102동과 사이에 외부계단이 설치됨에 따라,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에 소음, 조망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하부 주민공동시설(경로당, 게스트룸, 맘스키즈카페 등)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북동측으로 휴게공간, 남측으로 휴게공간과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03동 1,2,3,호세대는 구조상 실외기실내에 배수 및 우수 입상배관이 벽체와 일정간격 이격되어 시공이 됩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3개소(102동 남측,105동 북측,106동 북측) 이며, 101동, 103동, 104동은 인근 동과 공동사용할 수 있습니다.</p> <p>서측 소공원 인근에 단지 레벨차 극복을 위한 외부계단 및 장애인용 외부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104동	<p>서측 및 남측 외부도로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p> <p>하부 근린생활이 설치되어 이에 따른 저층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북측으로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04동 후면에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정화조 청소용 배관이 설치되어, 정화조 청소차의 출입 및 작업으로 냄새가 발생할수 있으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3개소(102동 남측,105동 북측,106동 북측) 이며, 101동, 103동, 104동은 인근 동과 공동사용할 수 있습니다.</p>

		1,2호용 엘리베이터 1대, 3,4,5,6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05동	<p>서측 외부도로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p> <p>하부 지하층의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 GX룸, 탁구장, 샤워/탈의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저층 세대에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북측으로 휴게공간, 남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05동 펜트하우스 타입, 테라스에는 전층 배수의 원활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벤트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p> <p>105동의 아파트 옥상에는 정화조 배기탑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하여 인접 고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105동 1호 세대는 주방, 침실3 창을 통해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보일 수 있습니다.</p> <p>1,2호용 엘리베이터 1대, 3,4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106동	<p>1,2,3,4호용 엘리베이터 2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p>동측의 외부도로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p> <p>문주와 하부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디자인으로 인해 저층부 세대가 일부 간섭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망권 침해 및 시야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북측으로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공간, 남서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06동의 아파트 옥상에는 정화조 배기탑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하여 인접 고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106동 1호 측면에는 공동주택의 정화조 청소용 배관이 설치되어, 정화조 청소차의 출입 및 작업으로 냄새가 발생할수 있으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의 차량출입 램프 및 경보기가 설치되어 이로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은 84A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미건립 타입은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 주방가구 배치 및 색상/ 타일, 도배지 무늬패턴 등은 동일평형이라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p>
단위세대	건본주택 및홍보물	<p>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p> <p>건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p> <p>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건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습니다.</p> <p>건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p> <p>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p> <p>건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p>

	<p>주택형에 대한 혼동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건본주택 내 인쇄물,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홈페이지에 사용된 단지이미지컷 과 전시모형은 전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당 단지는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입면분할형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외부골조에는 철재난간이 시공되어 확장형 단위세대와 그 입면 및 조망여건 등이 상이함으로, 실시공시 계약자의 확장옵션 선택 정도에 따라 외부입면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대내 대피공간의 출입도어에는 법규에 따라 비상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도어클로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p> <p>세대내 현관방화문, 대피공간의 방화문, 실외기실의 철재도어의 디자인, 강판의 재질, 부속품의 형태 및 기능, 경첩의 개소 등은 추후 실시공 시, 동등 이상으로 교체/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건본주택 내 부착되어있는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CG)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대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건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품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합니다.</p> <p>건본주택에 설치된 현관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만든것으로 실제 시공제품 무관합니다.</p> <p>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콘센트, 스위치, 조명기구,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변경될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에 표시된 욕실 및 발코니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에 표시된 에어컨냉매매립배관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에 설치되는 천장형 냉난방기는 건본주택 전용으로 본 공사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p>
	<p>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건본주택 및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본주택을 우선으로 함)</p> <p>공장생산 자재(인조대리석류, 타일, 벽지, 시트, 마루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됩니다.</p> <p>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p> <p>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건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p>
마감재	<p>단위세대는 대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공통사항	<p>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합니다.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습니다.]</p>

		<p>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00mm일 때, 거실아트월석재, 타일 마감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아트월두께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p> <p>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및 세대간 벽체(경량 또는 골조, 조적 등)는 현장여건 및 사용상 편의성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설계변경 및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습니다.</p> <p>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p> <p>입주자가 사용을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일체의 이동식 가전)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당사가 안내하는 위치에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p> <p>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 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일부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선행시공세대로 하용될 수 있으며, 샘플하우스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일반세대와 동일하게 수분양자에게 인도할 예정입니다.</p> <p>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설치 시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p> <p>안방앞발코니, 다용도실, 에어컨 실외기실, 대피공간 발코니의 경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여도 비난방, 비단열 공간이며,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세대 세대환기용 기계식환기장비가 각 세대의 컨디션에 따라 발코니 및 다용도실 천정에 설치됨에 따라, 해당장비를 가리기 위한 천정 마감으로 인해 반자높이가 다른 타입에 비해 낮고, 천정 부위별 그 높이 또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타입은 세대환기용 기계식 환기장비가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됨)</p> <p>테라스세대 55T 타입의 세대 전열교환기는 세탁실 천정이 설치되어지며, 그로 인해 천정 마감과 점검구가 설치 되며, 타 세대보다 천정고가 낮아집니다.</p> <p>에어컨 실외기실 바닥 배수구는 실외기실의 우수 유입 및 청소용 배수구로써, 겨울철 배수관의 동파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p> <p>에어컨 매립배관은 안방 벽걸이형, 거실 스탠드형 설치 기준으로 매립 시공 되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에어컨 매립배관은 설치 되지 않습니다.</p> <p>테라스 세대는 상부층과 우수 및 배수 배관 위치가 상이하여 배관의 꺾임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배수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p>
--	--	---

	<p>84C 타입을 제외한 모든세대의 주방 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p> <p>각 동 옥상에는 화장실 배기용 배기탑이 설치되며, 배기탑 소음이 인접 세대로 전달 될수 있습니다.</p> <p>일부 발코니에 우수입상배관 및 발코니배수배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p> <p>세대환기용 환기장비로 인하여 안방발코니나 주방발코니 상부에 설치되는 경우, 장비 및 배관을 가리기 위한 천정 마감이 설치 될 경우, 반자높이가 낮아 질 수 있습니다.</p> <p>세탁실 세탁기/건조기 설치구간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간섭으로 보일러 유지 보수시에는 세탁기/건조기를 이동 후 보수 진행해야 합니다.</p> <p>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p> <p>발코니 및 세탁실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당단지의 세대 천장고는 2,300(욕실은 2,200)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층세대 및 최상층세대(펜트하우스 하부층 포함, 상부층 제외)만 특화계획이 반영되어 천장고가 2,400(욕실 2.200)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창호의 크기, 주방/일반가구의 수납공간, 목창호 크기는 1층세대 및 최상층세대도 기준층 세대와 동일합니다.</p>
제공품목	<p>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내 인쇄물 및 카탈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각 세대 타입별 제공되는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상판포함)의 사이즈 및 내부구성, 형태, ACC 등은 서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p> <p>테라스세대 59T 형의 경우 확장형 선택시에 주방가구에 오픈형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되나, 뚜껑식 김치냉장고는 설치가 불가합니다.</p>
가구공사	<p>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p> <p>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p> <p>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 공사시 동등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현관 신발장 또는 주방가구 내에 EPS가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수납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습니다.</p> <p>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
창호공사	<p>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사양 등의 창호 사양 및 개폐방향은 인허가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창호의 프레임은 도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분양홍보물은 참조용으로 도장이 적용되는 부분은 실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견본주택의 경우 외부창호 프레임에 도장 유사색상의 시트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본공사시 재질의 차이에 따라 다소 달라보일 수 있습니다.</p> <p>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시공된 내/외부창호의 개폐방향은 실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전기/설비 공사	<p>건본주택에 시공된 내/외부창호의 손잡이 형태는 실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하며, 루버외부에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캡이 시공됩니다.</p> <p>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거실, 안방, 침실의 창호는 입면 분할형 이중창이 설치되며, 이중창의 외부창호 하부는 고정형 유리로 되어있어 개폐가 불가능합니다.</p> <p>비확장형(기본형) 단위세대는 분할형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외부골조에는 철재난간대가 설치되어 외부입면이 확장형 단위세대와 상이하오니 이점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p> <p>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거실, 침실의 내부창호만 LS (Lift &amp; Sliding) 시스템이 설치됩니다</p> <p>세대내 창호(목창호, 발코니 창호, 금속창호 등)의 위치는 내부마감 및 문틀 고정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내 창호 (목창호, 발코니 창호, 금속 창호 등) 는 마감 및 문틀 고정방법에 따라 문틀 규격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 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개수대, 가스쿡탑, 주방후드의 위치는 시공 중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닙니다.</p> <p>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도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능합니다.</p> <p>각동 1층에는 DA(제연DA 포함), 지하주차장 환기창,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p> <p>소방시설법에 따라 테라스세대(TH세대) 테라스에는 피난용 완강기거치대 및 완강기가 설치되어, 위급사항시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단, 이는 인허가청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에는 각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일부에 한하여 실외기실 외의 주차장공간에 설치가 됩니다.</p> <p>주차장 급배기 환의 가동시, 소음및 진동이 발생할수 있습니다.</p> <p>제연용 환의 관리 및 유지보수시, 가동으로 인해 각동 출입구에 위치한 그릴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수 있습니다.</p> <p>소방시설법에 따라 지하주차장 2층에는 제연환이 설치되며, 각동의 전실 주변상부로 덕트가 노출되어 시공됩니다.</p> <p>지하층 창고 및 엘리베이터 홀 에어컨 기동을 위한 실외기는 지하 주차장 노출 설치되며, 열교환된 냉/열기는 지하 주차장으로 배출됩니다.</p> <p>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는 상가 주변 내/외측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101, 104동의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부대시설용 에어컨 실외기는 1층 조경 구간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합 101동~106동 전동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도시가스 배관은 각동 외부 벽면에 노출로 설치되며, 테라스세대(TH세대)주변에는 TH세대용 별도의 가스배관이 수평으로 노출되어</p>

		<p>시공됩니다.</p> <p>당 단지내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되며, 당 단지 외 1,3지구의 가스공급을 하게 되며, 피트니스센터 외부창호 전면에 설치가 됩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p> <p>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의 경관조명(계획시)에 의한 눈부심등의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p> <p>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되어 공용부전력으로 활용되어질 예정이며 이에 의해 빛반사등에 의한 눈부심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에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옵션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건립세대의 경우, 평면에 따라 조명기구 수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발코니 및실외기실	<p>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의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실외기실에는 피난을 위한 하향식 사다리가 설치되며 층별 좌측과 우측으로 위치는 상이하게 설치됩니다. 또한, 피난사다리의 커버에 별도 마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p> <p>다용도실 세탁기설치구간의 바닥단차는 세탁기/건조기 사용성 증진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탁기/건조기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다용도실내 시스템선반의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견본주택, 카달로그, 분양홍보물(모형,CG)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p>
유상옵션	공통	<p>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p> <p>상기 별도 계약 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p> <p>추가 선택 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p> <p>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부위는 카탈로그 기준으로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가구 및 마감재	<p>확장 미선택 세대의 경우 주방벽은 벽타일(300*600)이 시공되며 주방벽 악세사리가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주택형별 컬러 및 모델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카달로그를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확장 선택 세대의 경우 하이브리드쿡탑이 설치되며, 기본형 선택시에 제공되는 3구 가스쿡탑이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p> <p>외산 주방가구 옵션 미선택 시 국산 주방가구와 색상, 크기, 디테일, 하드웨어, 악세사리, 구성 등이 상이합니다.</p> <p>59m2, 77Bm2 형의 경우 확장 시 제공 주방가구의 상부장과 키큰장 측면에 일부 제공되는 측면오픈장이 외산 주방가구 옵션 선택시 제공되지 않습니다.</p> <p>현관중문 옵션에 시공되는 슬라이딩도어는 본공사시 사용성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레일 및 도어등의 디테일과 형태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가전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적용품목이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장이 설치되며, 상부장을 제외한 가구도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X 기타 사항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92019-101-0007700	31,497,6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 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감리회사	감리 금액	비 고
건축감리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1,286,271,800원	
소방/통신/전기 감리	주식회사 지여이앤씨	228,0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p><b>녹색건축 예비인증서</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50%;">건축물 개요</th> <th style="width:50%;">인증 개요</th> </tr> <tr> <td>                     건축물 명 : 대치동 구미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주 : 대치동 구미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준공(예정)일 : 2021.11.30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77번지 일대                      층 수 : 지하3층, 지상15층                      면적 : 46,659,989.4㎡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건축화합건축사사무소                 </td> <td>                     인증번호 : 2019-421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유효기간 : 2019.10.01. ~ 사용검사일                 </td> </tr>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인증 등급</th> </tr> <tr> <td colspan="2">                     인증등급 : 무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td> </tr> </table>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받았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종합등급 ★★☆☆</p> </div> <p style="text-align: right;">2019년 10월 01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감정원</b> </p> <p><small>*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small></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 명 : 대치동 구미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주 : 대치동 구미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준공(예정)일 : 2021.11.30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77번지 일대 층 수 : 지하3층, 지상15층 면적 : 46,659,989.4㎡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건축화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019-421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유효기간 : 2019.10.01. ~ 사용검사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 무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p><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b></p>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 20.)</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50%;">건축물 개요</th> <th style="width:50%;">인증 개요</th> </tr> <tr> <td>                     건축물명 : 대치동구미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연도 : 2021년 11월 30일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77 일대                      층 수 : 지하3층 / 지상15층                      면적 : 46659.9894(㎡)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건축화합건축사사무소                 </td> <td>                     인증번호 : 19-주-에-1-0217                      평가자 : 이주영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 1등급                 </td> </tr> </table> <p>※ 「1」의 인증 등급은 공해 수준을 나타냅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th> </tr> <tr> <th style="width:25%;">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kWh/㎡·년)</th> <th style="width:25%;">요구량</th> <th style="width:25%;">등급</th> <th style="width:25%;">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kg/㎡·년)</th> </tr> <tr> <td>90.2</td> <td>140.3</td> <td>1</td> <td>32.9</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th> </tr> <tr> <th>구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년)</th> </tr> <tr> <td>냉방</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난방</td> <td>48.3</td> <td>89.7</td> <td>69.3</td> <td>18.6</td> </tr> <tr> <td>급탕</td> <td>30.7</td> <td>35.6</td> <td>26.3</td> <td>7.2</td> </tr> <tr> <td>조명</td> <td>11.2</td> <td>11.2</td> <td>30.9</td> <td>5.3</td> </tr> <tr> <td>환기</td> <td></td> <td>3.9</td> <td>10.8</td> <td>1.8</td> </tr> <tr> <td>합계</td> <td>90.2</td> <td>140.3</td> <td>137.3</td> <td>32.9</td> </tr>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제회, 기압,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 에너지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화석화합물 배출량      ※ 이 건물은 생활에너지 (E) 1차등급(★)을 받았습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등 용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받았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9년 02월 27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건축에너지기술원</b> </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대치동구미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연도 : 2021년 11월 30일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77 일대 층 수 : 지하3층 / 지상15층 면적 : 46659.9894(㎡)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건축화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19-주-에-1-0217 평가자 : 이주영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kWh/㎡·년)	요구량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kg/㎡·년)	90.2	140.3	1	32.9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8.3	89.7	69.3	18.6	급탕	30.7	35.6	26.3	7.2	조명	11.2	11.2	30.9	5.3	환기		3.9	10.8	1.8	합계	90.2	140.3	137.3	32.9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 명 : 대치동 구미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주 : 대치동 구미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준공(예정)일 : 2021.11.30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77번지 일대 층 수 : 지하3층, 지상15층 면적 : 46,659,989.4㎡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건축화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019-421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유효기간 : 2019.10.01. ~ 사용검사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 무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대치동구미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연도 : 2021년 11월 30일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77 일대 층 수 : 지하3층 / 지상15층 면적 : 46659.9894(㎡)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건축화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19-주-에-1-0217 평가자 : 이주영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kWh/㎡·년)	요구량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kg/㎡·년)																																																													
90.2	140.3	1	32.9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8.3	89.7	69.3	18.6																																																												
급탕	30.7	35.6	26.3	7.2																																																												
조명	11.2	11.2	30.9	5.3																																																												
환기		3.9	10.8	1.8																																																												
합계	90.2	140.3	137.3	32.9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사업주체명	시공회사명
대치제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법인등록번호 : 114671-0030885)	롯데건설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 110111-0014764)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주택전시관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사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사오니 반드시 사전예약 후 견본주택 방문하시기 바라며, 미예약 방문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ww.lottecastle.co.kr>

■ 분양문의 : ☎ 1811-8448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으며, 이 경우는 관계법령이 우선함.)